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등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9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3
2. 대포폰 위반사실 자진 신고 형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	8
3.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	15
<참고자료 1>	19
<참고자료 2>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8.

다. 회부연월일 : 2025. 5.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은 주로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이용자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대포폰 개통이 상대적으로 쉽게 증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생략)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생략) 6. 제92조제1항제1호(<u>제32조의4제2항</u>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u>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5항</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활용된 대포폰 적발 건수¹⁾도 2022년 53,104건에서 2024년 94,53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과 연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1) 브릿지경제, “보이스피싱 온상’ 대포폰 개통, 실시간으로 막는다’, 2025. 3. 2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24501075?site_preference=normal&utm_source=chatgpt.com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대포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0조의2 신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이러한 대포폰의 위험성 고지 절차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융사기 등 대포폰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범죄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불법 개통을 자발적으로 회피할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대포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무지로 인한 명의 제공이나 개통 협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를 지닐 수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본인확인 절차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를 보다 의식적으로 보호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포폰 위험성 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역시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고액 알바’ 등의 사기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포폰을 개통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의 범죄 연루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업자는 불법성 등의 고지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과태료 부담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고지의무 부분(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등)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으며, 소관 부처에서도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각심 제고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행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과 과태료 부담이 있으며 법적 분쟁 소지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2. 대포폰 위반사실 자진 신고 형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

이용자의 범죄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포폰은 주로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포폰을 사용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 대한 형 감경 또는 면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위반 관련자들의 자진신고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며 대포폰을 활용한 2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대포폰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대포폰 개통 등에 대한 자진신고의 동기를 확보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u>나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 ④ (별도 검토)</u>
--	--

□ 검토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²⁾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대포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³⁾은 불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법적으로 개통된 대포폰을 활용한 자금 제공·유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불법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97조제7호4)는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3의2호⁵⁾까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의4에서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대포폰 개통·사용으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부분은 이러한 대포폰을 사용한 법률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형의 일부를 감경하

행위

- 4)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5)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유통한 사람이 자진 신고 시 형 감경 가능성이 보장되어 범죄에 악용되기 전에 대포폰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포폰 이용자의 자진 신고를 통해 조기에 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고령자나 청년층의 범죄조직에서의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기존 법률인 「형법」에 따라서도 자진신고 시 형 감경 가능

○ 우선, 기존 법률인 「형법」에 따라서도 자수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어, 해당 법률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별도로 대포폰 관련 자진신고 시 형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감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형법」 제52조제1항⁶⁾

에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수에 따른 형 감경이라는 부분은 「형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중복하여 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내구제7) 대출’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상적인 방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계층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내구제 대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내구제 대출은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대출을 받을 사람)를 모집⁸⁾하고,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⁹⁾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해당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활용, 소액결제 활용, 중고 판매 등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후 일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내구제 대출에서 피해자는 향후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금 발생,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우려로 범죄조직의

6)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약자로 주로 제도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개통·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넘긴 뒤,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함.

8) 범죄조직은 SNS 등을 통해서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9) 내구제 대출의 대상은 고가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리대상에서는 주로 휴대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유인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진신고 시 형 감면 조항이 개정되어 형 감경이 과거보다 용이해질 경우, 범죄조직이 이를 유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부담이 줄었다고 인식해 범죄에 쉽게 가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진신고자 감면은 제도운영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내구제 대출자의 피난처 역할 제공 등 사기 범죄 방조에 대한 면책수단으로 악용¹⁰⁾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현행 「형법」에 따라서도 자수하여 협조한 경우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 법률 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신고는 경찰청¹¹⁾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사·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자진신고 접수·처리·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자진신고자 면책·감면 조항은 내구제 대출자 등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피해자 유인·모집 → 내구제 대출 시행 → 보이스피싱·스캠 등 범죄에 회선 이용 → 자진신고 감면 안내 → 내구제 대출자 면책 가능> 이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에 따라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운영 등 노력에도 근절이 어려운 영역이 바로 내구제 대출임. 특히, 내구제 대출은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되어 이통사에 손실이 큰 상황으로 면책 조항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자진신고 시 감면(안 제30조의2제1항) 부분은 대포폰 개통·유통자의 자진 신고 시 형 감경을 허용함으로써, 범죄 악용 전 회수를 유도하고 금융사기 등 관련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어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사기 범죄 방조에 대한 면책수단으로 악용 우려, 현행 「형법」상 자수 시 감면 조항 존재 의견과 이해관계자의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 유인책 사용 가능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3.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대포폰 사용 및 개통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며,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 ② (별도 검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예방 및 방지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진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사항

- 동 개정안의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포폰 사용에 따른 위반행위의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진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대포폰 개통·사용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포폰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명의 대여 행위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타당성이 있음.
 - 특히 청년층 및 미성년자 등 대포폰 개통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교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할 경우, 대포폰 범죄 연루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자진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해당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

조의6제3항¹²⁾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포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교육하는 업무나 자진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교육 업무의 전담 근거 규정까지 법률로 정할 입법적 실익이 상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¹³⁾의 경찰청 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1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자진신고 시스템 구축 등 부분(안 제30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은 대포폰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교육·홍보를 통해 이용자 인식을 높이고 명의 대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나, 경찰청 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자료 1> 내구제 대출 관련 통계

-자료: 경찰청,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2022. 10. 14.

□ 내구제 대출 관련 통계

- 통계관리 시스템상으로 별도 추출이 곤란하며, 대포폰 통계 및 일반적 불법사금융 통계(내구제 대출은 미포함)를 제공함

□ 대포폰 통계

<2017년 ~ 2022년 6월 대포폰(대포유심 포함) 적발 현황(단위: 대)>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월~6월
적발 대수	15,910	9,343	19,080	8,923	55,141	27,176

□ 불법사금융 통계

<2017년 ~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기 간	총계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건수	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17년	1,554	3,292	1,062	2,401	221	379	271	512
'18년	1,709	3,424	1,206	2,549	279	450	224	425
'19년	1,833	3,488	1,309	2,575	227	383	297	530
'20년	1,592	3,423	1,030	2,362	240	474	322	587
'21년	1,018	2,080	524	1,209	232	389	262	482
'22년 1월~8월	677	1,411	321	729	145	276	211	406

<참고자료 2> 내구제 대출 설명

-자료: 경찰청,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2022. 10. 14.

□ 내구제 대출 설명

- (개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행위
- (특징) 피해자도 대포폰 등 제공행위로 형사처벌 가능

<내구제 대출 과정 및 사례>

	광고	속임	휴대전화 개통	피해			
과정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 이용 대출 홍보	통신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 (유심) 개통 요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 개통 후 제공 ※ 제공된 대포폰 등은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	피해자의 통신요금, 소액결제 요금 납부 책임 등			
사례	▶ 급전대출 ▶ 소액대출 ▶ 신속대출 ▶ 휴대전화담보 ▶ 내구제 대출 ▶ 휴대전화 개통 50~300만 원 ▶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 ▶ 휴대전화 소액결제 ▶ 통신사 관계 없이 100만 원 ▶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손에	▶ “즉시 현금 지급, 통신요금 대납으로 추가 피해 없다” ▶ “휴대전화 개통하면 값을 의무가 없다”	▶ 피의자 : 대포폰(유심) 개통 및 중개행위 등 처벌 가능 ▶ 피해자 : 대포폰(유심) 제공행위 등 처벌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사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처벌 가능			
	수령금액(예시) ▶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개통 당 50만 원 * 총 3대 ⇒ 총 150만 원 수취	피해금액(예시) <table><tr><td>▶ 통신이용료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td><td>▶ 기기 할부금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td></tr><tr><td>▶ 소액결제이용료 월100만 원*3대*3개월 = 900만 원</td><td>▶ 추가 기깃값 210만 원</td></tr></table> ⇒ 갚아야 할 금액 총 1,290만 원 ※ 별도 대포폰(유심) 양도행위로 처벌 가능			▶ 통신이용료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	▶ 기기 할부금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	▶ 소액결제이용료 월100만 원*3대*3개월 = 900만 원
▶ 통신이용료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	▶ 기기 할부금 (월10만 원)*3대*3개월 = 90만 원						
▶ 소액결제이용료 월100만 원*3대*3개월 = 900만 원	▶ 추가 기깃값 210만 원						